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교육대학원생의 복리를 증진하고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설치) 본 회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내에 둔다.

제 4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5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회원 모두는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의 사업계획, 재정, 그 밖의 운영전반에 관해 알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본 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대하여 적극 참여해야 한다.

4)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한다.

제 6조 (구성)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 학생총회, 대의원회, 총학생회 및 집행부를 둔다. (단, 본 회칙에 의한 구성 이외의 신규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교육대학원 대의원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장 교육대학원 학생총회.

제 7조 (지위 및 구성) 교육대학원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기구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8조 (명칭) 이회는 교육대학원 학생총회라 칭한다.

제 9조 (의장)

1) 교육대학원 학생총회의 의장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된다.

2)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집행부에서 선출된 자가 교육대학원 학생총회를 진행한다.

3)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집행부 모두 궐위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장이 학생총회를 진행한다.

제 10조 (업무 및 권한) 교육대학원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회원 전체의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 의결.

2) 총학생회장 및 집행부에 관한 탄핵을 의결.

3) 진행 사업의 보고.

4) 예산, 결산의 보고.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1조 (소집)

1)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대의원회 과반수이상의 요구, 또는 회원의 1/5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 회의 소집은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2조 (총회의 성립)

1) 총회는 회원의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단, 10조의 2항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으로 된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제 13조 (발언권)

1) 교육대학원 학생총회의 발언권은 회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으며 필요시 의장에게 의사를 구하고 발언 할 수 있다.

제 3장 대의원회

제 14조 (구성)

- 1) 대의원회는 총학생회장, 부회장, 집행부, 전공대표로 구성하고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 2)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집행부에서 선출된 자가 대의원회를 진행한다.
- 3)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집행부 모두 궐위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대의원회를 진행한다.
- 4) 대의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전공대표 중 1인을 학생회비 운영에 관한 '감사'로 임명한다.

제 15조 (소집)

- 1) 정기 대의원회는 매학기 시작 20일 이후, 종료 20일 이전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 대의원회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공대표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 3) 대의원회 구성원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드시 대의원회 소집에 응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불참시 대리인 참석, 위임장 제출의 의무를 진다.

제 16조 (업무 및 권한)

- 1)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
- 2) 집행부 업무 계획 승인권.
- 3) 예산 및 결산의 감사 및 승인권.
- 4) 집행부 각 부장의 인준권.
- 5) 기타 단체에 대한 인준권.
- 6) 필요에 따라 각 권한을 총학생회로 상정 및 위임할 수 있다.
- 7)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시특별기구의 제안, 설치 및 동의를 할 수 있다.

제 4장 총학생회.

제 17조 (지위) 총학생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자 운영기구이다.

제 18조 (구성)

- 1)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홍보부장(각 1인), 집행부원(2인)으로 구성한다.
- 2) 총학생회의 구성원의 3명이상이 같은 전공이어서는 안 된다.

제 19조 (임명)

- 1) 총학생회장은 회원 전체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선거는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2) 부학생회장은 경선의 경우 차순위자, 단선의 경우 총학생회장의 추천과 정기대의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 3) 각 부장은 지원서를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해야하며, 정기대의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결정한다.)

- 4) 집행부원은 각 부장의 추천서 혹은 지원서를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 20조 (임기)

- 1)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선발된 학기 종료일부터 다다음 학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 2) 각 부장 및 부원의 임기는 1학기로, 최대 1년까지 연임가능하다.
- 3) 모든 임원은 어떠한 사유에서도 같은 직책으로 1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 4) 임원중 결원이 생겨 충원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5) 탄핵 등의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21조 (소집) 총학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매달 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한다.

제 22조 (권한 및 의무)

- 1) 매학기 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2) 매학기 말 사업결과 보고서 및 결산서 작성.
- 3)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현황의 공개.
- 4) 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의 집행.
- 5) 회칙개정 발의.
- 6) 총회 소집에 응할 의무.
- 7) 차기 총학생회의 선거.
- 8) 운영에 필요한 임시기구 설치권과 특별기구 설치제안.
- 9) 기타 긴급사항의 결의, 집행.

제 23조 (자격의 상실)

- 1) 불손한 의도로 본 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 경우.
- 2) 총회를 통해 탄핵될 경우.
- 3) 불성실한 태도로 총학생회의 운영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총학생회장의 직권으로 파면.
- 4) 개인 신변상의 문제로 더 이상 총학생회 집행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제 24조 (탄핵) 총학생회장은 아래의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된다.

- 1) 학생회비를 배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경우.
- 2) 불성실한 학생회 운영으로 인해 학생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
- 3) 공식적 탄핵의 요구가 있을 시에 총학생회는 공식 성명을 게시판 등을 활용, 회원들 모두가 사실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5조 (장학금)

- 1) 23조의 1, 2항에 의거한 자격을 상실한 집행부는 해당학기 수혜 장학금의 전액을 학생회비로 환수한다.
- 2) 23조의 3, 4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상실한 집행부원은 해당학기의 남은 임기의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장학금을 학생회비로 환수한다.
- 3) 결원이 보충되었을 시에는 수행할 임기의 비율을 계산하여 전임자의 환수된 장학금을 재 지급한다.
- 4) 집행부원 2인은 매학기 당 500,000원(금 오십만 원)의 장학금을 학생회비에서 지원받는다.

제 5장 총학생회장.

제 26조 (지위)

- 1) 총학생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교육대학원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총학생회장은 총회와 대의원회 및 총학생회의 결의사항을 집행, 처리하며 모든 안건의 결

의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2) 부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양인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집행부에서 선출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27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의 학생총회 및 집행부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2) 회칙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3) 각 부장을 추천하여 교육대학원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4) 각 부장의 추천으로 혹은 본인의 희망으로 집행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심사하고 임명한다.

5) 학생회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동의를 거쳐 교육대학원 학생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6장 비상대책위원회

제 28조 (지위 및 구성)

1)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탄핵, 사퇴, 후보자 미등록 등의 사유로 총학생회의 궐위 시 총학생회의 권리와 의무를 지며, 대의원회원들로 구성된다.

2) 대의원의 가반수의 동의를 얻은 대의원회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며 비대위의 의장이 된다.

제 29조 (목적) 비대위는 정상적인 총학생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30조 (설치기간) 비대위는 총학생회의 궐위시부터 학기 중 일자만 따져 30일내에 총학생회장 선관위를 구성해야하며, 총학생회가 구성된 이후 해산한다.

제 31조 (직무대리) 비대위는 설립일부터 총학의 모든 직무를 대리한다.

제 7장 재정

제 32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수입금,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재정은 전액 본 회의 복지 및 학술연마를 위한 용도로만 운영가능하며, 본 회원이 아닌 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사적운영을 할 수 없다.

제 33조 (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전 학생회 임기종료 일시부터 다음 학생회 임기 시작 일시까지 만 1년으로 한다.

제 34조 (회비)

1) 본 회의 회비는 학생회에서 책정하며, 총회에서 심의·확정한다.

2) 회비는 입학한 학기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5조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은 사업비, 활동비, 장학금으로 나누어 학생회 회의에서 조정·확정한다.

2) 사업비는 학생회 공식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3) 활동비는 공식 사업간 지출되는 통신비, 교통비, 주차비, 식대 등으로 운영한다.

4) 장학금은 4장 25조에 따른다.

제 37조 (준예산편성)

- 1) 총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2)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각 행사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학생회 회의에서 심의·확정한다.

제 38조 (심의 및 승인)

- 1) 총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기 내에 심의하고 승인받는다.
- 2) 거부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회기 내에 토의를 거쳐 수정하고 승인받는다.

제 39조 (예산집행 및 경정예산)

- 1) 예산 집행안은 예산안에 의거하여 행사 종료 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2) 예산안이 확정된 후 생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학생회 회의를 거쳐 심의·확정한다.

제 40조 (공고) 학생회는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및 결산내역을 7일 이내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조 (예산관리)

- 1) 학생회비 징수·관리는 총무부에 위임하되 그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따른다.

제 42조 (인수인계)

- 1) 당해 총학생회는 차기 학생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학생회비의 일부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 2) 차기 총학생회장은 결산보고에 필히 참석해야하며 임기의 시작 일에 학생회비 잔액을 인계한다.

제 8장 기타

제 43조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반영)

- 1)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을 반영하여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가 연합회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총학생회장이 판단 될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
- 2)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임원진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대의원), 부총학생회장(집행위원) 2인으로 활동하며, 추가 선발이 가능할 시에는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임원진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 3)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에 따라 연합회 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 9장 회칙의 개정.

제 44조 (발의) 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 집행부 인원 과반수, 대의원 1/3이상의 제안으로 발의한다.

제 45조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교육대학원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 46조 (공포)

- 1) 교육대학원 대의원회에서 의결,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의장이 즉시 공포한다.
- 2) 공포 후 7일 이후까지 회원들의 정정건의가 없을 시 발효한다.

부칙.

제 1조 (관례)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